

성산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7명
2. 입소대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
3. 모집방법
 - ① 현수막 광고 및 관계기관 연계 소개 및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 ② 시설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 장기요양 등급별 추가금액(2.3:1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 수가	86,030원	79,810원	75,360원

▷ 본인부담금(30일기준)

등급	월 금액	본인부담금			식비+ 기타비용	합계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	2,580,900	516,180	309,708	206,472	330,000	846,180	639,708	536,472
2	2,394,300	478,860	287,316	191,544		808,860	617,316	521,544
3~5	2,260,800	425,160	271,296	180,864		782,160	601,296	510,864

▷ 본인부담금(31일기준)

등급	월 금액	본인부담금			식비+ 기타비용	합계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	2,666,930	533,386	320,032	213,354	341,000	874,386	661,032	554,354
2	2,474,110	494,822	296,893	197,929		835,822	637,893	538,929
3~5	2,336,160	467,232	280,339	186,893		808,232	621,339	527,893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입소자의 의무

-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의무
-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계약해지 및 퇴소]

1. 계약해지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퇴소조치
 -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⑤ 신체기능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프로그램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입소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 - ①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용 상급침실사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6. 시설에서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음등)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호하여야 한다.
7. 임종이나 감염병 격리를 위한 특별침실 사용 시 추가비용은 받지 않는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처리절차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관한 통보 및 동의를 득한 후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소자는 시설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2.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항 및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